

##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① 이 규정에서 특별임용교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정관」, 「교원인사규정」, 「명예교원에 관한 규정」, 「겸임교원규정」, 「강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 규정에 따라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8.12. 1, 2019. 8. 29.)

② 특별임용교원은 석좌교수, 교류교수, 초빙교수, 예우교수, 대우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산학특임교수, 강의전담명예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2. 1, 2015. 3. 1, 2018.12. 1, 2019. 8. 29.)

**제3조 (자격)** 특별임용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 2015. 3. 1, 2018.12. 1.)

1. 석좌교수: 특정분야의 연구실적이 현저하며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외부기금 또는 교비에 의한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할 자(개정 2023. 2. 28.)
2. 교류교수: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인정된 자로서 본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의 교수(개정 2019. 8. 29., 2022. 3. 1.)
3. 초빙교수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19. 8. 29.)
4. 예우교수: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그에 상응하다고 인정된 자.
5. 대우교수: 교육활동 및 교육을 위해 임용된 자
6. 특임교수: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자
7. 연구교수: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연구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임용된 자
8. 산학특임교수: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및 취업지원 활동을 위해 임용된 자 (개정 2022. 3. 1.)
9. 강의전담명예교수: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강의만 전담하기 위해 의원면직 한 자

**제4조 (임용기간)** ①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관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때에는 잔여 임용기간에 상관없이 당연 면직된다. (개정 2012. 12. 1, 2018.12. 1, 2019. 8. 29)

②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8.12. 1)

③ 강의전담명예교수 임용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 말일까지이며, 그 외 특별임용교원의 임용은 만 70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 1)

④ 수업반응도 평가 점수가 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계약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8.12. 1, 2019. 8. 29.)

**제4조의 2 <삭제** 2018.12. 1>

**제5조 (임용절차)** ① 특별임용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부·과(전공, 트랙)는 충원요구서를 임용예정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학부·과(전공, 트랙) 회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 9. 1, 2012. 12. 1, 2019. 8. 29)

② 총장은 교무처에서 확정된 임용예정인원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단과대학(원)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임용교원지원자를 심사하고 추천된 최종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신설 2019. 8. 29., 개정 2022. 3. 1.)

③ 석좌교수, 교류교수, 강의전담명예교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추천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개정 2019. 8. 29., 2022. 3. 1., 2023. 1. 10.)

1. 임용지원서 (전산입력)(개정 2019. 8. 29.)
2. 학력증명서 각 1부 (학사/석사/박사)(개정 2019. 8. 29.)
3. 강의경력증명서 1부(개정 2019. 8. 29.)
4.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개정 2019. 8. 29.)
5. 경력증명서 1부(신설 2019. 8. 29.)
6. 연구실적목록 1부(신설 2019. 8. 29.)

④ 특별임용교원으로 채용 확정된 후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신설 2019. 8. 29)

1. 특별임용교원 활용계획서 1부.

(학부·과(전공, 트랙)장 작성 및 제출)

**제6조 (처우)** ①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 또는 위탁기관의 기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 외 특별임용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 2023. 2. 28.)

② 특별임용교원에게는 연구실 및 집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임용교원을 교수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임용교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⑤ <삭제 2010. 9. 1>

**제6조의 2 (개별계약의 원칙)** 특별임용교원의 계약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임용계약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

**제7조 (임무)** 특별임용교원은 학교와의 약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전공분야 초빙교수는 전문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책임수업시수를 담당하여야 한다.

2. 교양분야 초빙교수는 별도로 정한 책임수업시수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8조 (강의)** 초빙교수는 주당 9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그 외 특별임용교원은 주당 6시수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장 및 소속부서장과의 협의에 따라 주당 9시수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 2014. 11. 1, 2018.12. 1., 2023. 1. 10.)

**제9조 (타규정 준용 및 세부사항)** ① 본 규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호서대학교 강사에 관한 규정 및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 1, 2019. 8. 29)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한국과학재단 지원에 따라 임용된 전문경력인사는 초빙교수로 한다.
2. 경력교수퇴직자 및 예우교수는 예우교수로 통칭한다.
- ③ 종전의 예우교수는 예우기간 만료와 동시에 경력교수 퇴직자 보수기준을 적용한다.
- ④ 예우교수가 한 학기 이상 해촉되었다가 다시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시간강사로 분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h2 style="margin: 0;">특별임용교원 임용신청서</h2>							
인적 사항	성 명				구분		
	주민등록 번호		전 화	(집)	(회사)		
			핸 드 폰				
소속	기 관 명		직 위		인사담당자 및 연락처		
학력	학 위	학교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세부전공	학위명	
	학 사						
	석 사						
	박 사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내 용					
임용 내용	소 속					직 급	
	임용기간	부터				까지 (1년간)	
기타 사항							

위와 같이 특별임용교원으로 임용코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인  
 학 과(부) 장 인  
 대 학 장(소속 기관장) 인

